

# I.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1998년 11월 26일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사전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.

## □ 제안이유

-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규제범위를 벗어난 조문의 일부개정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일부 삭제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의 범위를 당해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당초 5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미터이내를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완화하고
-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가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
  - 기본과징금에 위반횟수에 따라 추가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것을 기본과징금만을 부과토록 가감후 과징금란을 삭제

- 노외주차장의 경우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50만원내지 60만원을 부과하던 사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과징금 가감기준으로 이를 삭제

## □ 검토의견

-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일부가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조문에 명시한 근거법령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  - 조례제13조2항 : 노외주차장 설치신고⇒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
  - 조례제22조1항 :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⇒영별표1 비고 제9호
  - 조례제24조 : 지체부자유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⇒영제6조제1항  
별표1 비고 제10호
  - 조례제26조 : 과징금처분⇒영제17조제2항
  - 조례제27조 : 과태료처분⇒법제30조3항
- 조례 제26조와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가감기준을 기존 기본과징금에 위반횟수에 따라 추가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것을 기본과징금만을 부과토록 조정한 것은 그동안 행위자의 위반횟수에 따라 가증되는 과징금이 10%에서 20%까지 과다했던 사안으로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1항의 별표2에 근거하여 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- 위반행위의 종별중 8항의 노외주차장의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·양수한 때에 50만원내지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으로 금번 조항을 삭제토록 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여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